

I : 외국인환자 유치지원 사업 근거 및 등록제도 안내

● 「의료법」 개정을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2009년)

의료법(제27조의2)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유치기관과 유치업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소개·유인·알선 등을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가 허용됨

유치기관 등록제도의 의의

유치하고자 하는 기관에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등을 방지하여 외국인 환자에게 제공되는 한국 의료서비스 수준 관리 목적

- ※ 의료법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등록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 유치기관은 실적보고를 하도록 규정
- ※ 국내 의료서비스에 미치는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유치 병상수 제한, 국내보험회사의 유치업 제한

●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16년)

의료해외진출법은 의료기관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 편의성 및 안전성 증진 등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제정

- ※ 외국인환자 사전·사후 관리, 유치기관 평가지정 제도, 외국인 대상 의료광고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 ※ 과도한 유치 수수료의 제한,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사항 안내 등을 통한 외국인환자 대상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

● 등록요건

의료해외진출법(제6조 제1항)은 유치기관(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등록 요건을 규정

의료기관	유치업자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① 보증보험에 가입
②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② 자본금 1억원 이상 보유
	③ 국내 사무소 설치

● 등록절차

-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우편 제출 또는 웹사이트 신청
 -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medicalkorea.khidi.or.kr)에 기관 정보 전산 등록

■ 그림 1.1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절차



● 유치기관 등록 갱신

- 「의료법」 제2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2017. 6. 22까지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등록 갱신 필요
 갱신서류 접수 마감(2017. 05. 26)

● 유치기관 등록 유지 요건 등

-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등록 유효기간 : 등록일로부터 3년
- 등록기간 중 등록요건 유지 필수
 - ※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시정명령 통지
- 의료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재등록 절차 필요
- 유치기관의 대표자, 상호, 소재지, 연락처, 진료과목 등 기관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변경 서류 제출 필요
 - ※ 유치기관 담당자 정보 및 기관 기타 정보는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을 통해 상시 변경 가능
- 유치업 등록 철회 희망 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폐업 신청 필요

● 등록증 재발급 신청

-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 되어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
기 발급된 등록증 원본 반납(분실 시 분실사유서 첨부)

● 유치사업 등록 취소 사유

-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대상 이외의 자를 유치하려는 행위를 한 경우
 - 등록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에 외국인환자와의 진료계약 소개·알선 받은 경우
 - 의료해외진출법 제2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
- ※ 등록이 취소된 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재등록 가능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문의

-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1600-6767, ✉ medicalkorea@khidi.or.kr